



제 429 회 국 회 (정 기 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대표 파트너 선수에 대한 시책 마련 〉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52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대표 파트너 선수에 대한 시책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진중오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9. 12.
3. 회 부 일: 2025. 9.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도나 레슬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훈련하지만 파트너 선수의 생활여건 등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대표 파트너 선수에 대한 시책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가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선수 등의 <u>육성</u>)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4조(선수 등의 <u>육성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파트너 선수란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협회가 선정하거나 승인한 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법적인 정의나 대한체육회 등의 규정은 부재하지만, 대한유도회의 국가대표선수 선발·운영 내규 등 일부 규정에서만 파트너 선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¹⁾.

1) 「2026 국가대표선수 선발·운영 내규(안)」 제3조(용어의 정의)

- 현재 국가대표의 경우 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엔트리의 2~3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종목별 국가대표 정원으로 선발하여, 해당 인원 범위 내에서 상호 파트너로 훈련하고 있음.

[올림픽 인원대비 국가대표 인원 수]

(단위: 명)

종목	배드민턴	복싱	하키	유도	탁구	태권도	레슬링
올림픽 엔트리	16	13	36	14	6	8	18
국가대표 인원 (25년)	38	24	48	36	20	28	36

- 2025년 기준 국가대표 지원 대상 종목 45개 중 종목 특성에 따라 일부 종목(26개)의 경우, 종목단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파트너 선수를 선발하고 선수촌에 입촌하게 하여 훈련하고 있음.

[2025년 선수촌 자비입촌(일시방문) 선수]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종목(개)	26*	7	11	11	11	14	9	17	18	14	6
인원수(명)	2,925**	266	377	138	220	285	402	456	389	327	65

* 가라테, 근대5종,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복싱, 빙상, 사격, 사이클, 소프트볼, 수영(수구 포함), 스쿼시, 아이스하키, 우슈, 유도, 육상, 체조,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펜싱, 하키

** 국가대표 정원 : 45개 종목 1,534명(선수 1,170명, 지도자 364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 강화훈련 선수: 대한유도회 추천과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고 지원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로 '국가대표 선수'와 '강화훈련 참가 선수'로 구분한다.
2. 국가대표 선수: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과 본 규정에 따라 선발된 선수
3. 강화훈련 참가 선수: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대한유도회가 선발하고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국고 지원 훈련 선수
4. 파트너 선수: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팀 또는 대한유도회 예산으로 지원하며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 자비로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 이들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과 경기력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법적으로 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해 보상, 보험, 지원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이러한 파트너 선수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
- 다만, 현행법상 파트너 선수에 대한 정의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파트너 선수에 대한 명확한 지원과 시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국민체육진흥법에 ‘선수’ 육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근거가 이미 존재하며, ② 현행 국가대표 지원 사업도 국제대회 엔트리의 2~3배를 정원으로 선발하여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을 실시 중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③ 다만, 종목 특성에 따라 일부 종목에서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파트너 선수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트너 선수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① 파트너선수에 대한 정의 및 범위도 부재하여

파트너선수가 국가대표 탈락자, 선발 가능자, (장애인 선수대상) 동호회 비장애인 등 범위가 다양하고, ② 파트너 선수 지원에 한 직접적인 해외사례도 없으며, 현재 ‘종목단체 지원’ 사업으로 국제대회 참석 및 국내 훈련을 위한 파트너 선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